

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정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8. 31.(수)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2. 08. 10. 이호건 의원 외 13명 발의 (의안번호 20호)

나. 회부일자: 2022. 08. 18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【2022. 8. 31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호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성북구의회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처리(제4조~제5조)
 -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·기피 신청, 신고 등에 대한 조치 등
-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·관리(제6조)
-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(제7조)
-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(제8조)
-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(제9조)

-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(제10조)
-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(제13조~제1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유천곤)

- 본 규정(안)은 제정된 『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』이 금년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지방의회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은 제3조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의회사무국장을 지정하고, 제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관련한 신고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, 제17조에서 19조까지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교육과 상담, 자문기구 구성 운영에 대하여, 제20조는 징계양정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, 본 규정(안)은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